

2026. 4. 21.(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제2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

【 심 의 안 건 】

-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 천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1. 제안이유

- 당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확대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함
- 시청 AI당직 도입 기조에 맞춰, 업무 여건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용어 및 문구 일부를 정비함

2. 주요내용

- 가. 업무 여건 및 운영필요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나. 당직근무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14조제2항)
- 다. 보안점검표 서식 추가(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해당없음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사무국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당직의 정의)”를 “(당직 운영 및 보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사무실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은 업무 여건 및 운영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출장·휴가”를 “출장”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의 당직변경 대직 신고서”를 “전산시스템의 당직변경 절차”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5일”을 “10일”로,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당직명령권자”를 “당직명령권자에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보안점검표(전산시스템)

점검일: 년 월 일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이상 없음	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방치, 캐비닛·책상 잠금 여부)		
청소 상태		
소등 상태		
화기관리 상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의 전원스위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 인화물질 존재 여부)		
문단속 상태		

특이 사항

※ 점검 내용별로 점검 결과 이상 유무에 따라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제11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생략)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및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의 당직변경 대직 신고서에 따라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생략)

② 제1항의 당직근무에 따른 휴무는 근무종료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생략)
② 당직명령자는 사무실 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출장

--- 전자결재시스템의 당직변경 절차-----

-----.

제1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0일 -----
-- 공휴일은 제외한다 -----
--.

제16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직근무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
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의회
사무국장, 당직명령권자 즉시
연락

2.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17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

1. -----
----- 당직명령권자에게 -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 2022.12.12 의회규칙 제6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무원의 근무사항의 관리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근무상황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관리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당직근무

제10조(당직의 정의) 이 규칙에서 당직은 일직을 뜻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제11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및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의 당직변경 대직 신고서에 따라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중 사건·사고 발생상황
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점검결과
4. 그 밖에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한 상황

제13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규정된 표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명령에 따라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당직근무에 따른 휴무는 근무종료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

제15조(당직의 편성)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의 방범(防犯)·방호(防護)·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당직명령자는 사무실 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의회사무국장, 당직명령권자 즉시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의장, 의회사무국장, 당직명령권자에게 연락
2. 보호구역 등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와 함께 긴급한 사태 발생 및 경과를 의장, 사무국장, 당직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

제11조(당직근무) ① 사무과장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위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의정수행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에 1회 이상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무과장은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거나,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
2. 착신통화 전환 및 휴대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확보

제12조(재택당직 시 조치사항) 당직을 재택당직근무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간·야간 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시청, 소방서, 경찰서간 연락체계 강화
2. 재택당직근무자 또는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확행
3. 최종퇴청 후 걸려오는 전화를 재택 수신할 수 있도록 착신 전환장치 설치
4. 주요공부 및 공인관리 철저, 별지 제4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작성 등 그 밖의 사항 조치

이천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당직명령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숙직근무자와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내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 조정 및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1. 당직사령(6급이상) 1명

2. 당직원(7급 이하) 1명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보완대책(무인경비 용역 등)을 강구한 경우에는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시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3(무인당직시 조치사항) 제6조제3항에 따라 당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야간상황 관리체계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당직실, 경비용역회사, 경찰서, 소방서간 연락체계 강화

2. 최종퇴청자는 보안점검을 확인하고 퇴청

3. 최종퇴청 후 걸려오는 전화는 당직용 이동전화로 수신할 수 있도록 착신전환장치 설치

4. 재택당직근무자는 상황발생 접수 후 즉시 사무실에서 근무 실시

5. 중요공부 및 관인관리 철저 등 기타사항 조치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략)

⑥ 의장은 광명시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명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군포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 ① 군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군포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군포시와 통합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양평군의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의장은 양평군수와 협의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등 복무사항에 대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8.>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06
----------	-----

발의연월일 : 2026. 4. 10.

발 의 자 : 장성철 · 김선화 · 박혜숙
정창곤 · 이종문 · 양정숙
윤단비 · 김미자 · 윤병권
임은분 · 김 건 · 최은경
최초은 · 곽내경 의원
(14인)

1. 제안이유

-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의회위원의 참여 폭을 넓혀 정당 간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6명으로 규정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

다.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를 “의 정수는 6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 (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은 <u>3명 이상 5명 이하로</u>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 ----- <u>의</u> <u>정수는 6명으로</u> ----- .

의원발의 조례안 부서의견서

<p>자치법규명</p>	<p>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검토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p>주요내용</p>	<p>○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본 조례안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 위원에 대하여 추천권자가 외부 전문가를 추천할 경우 당초 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와 불부합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p>
<p>의견 제출자</p>	<p>의회사무국 입법정책과 재정분석팀장 허지혜(032-625-8060)</p>

자치법규안 의견서

자치법규명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 의견 : 적합 ○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로, 개정 취지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기획조정실 회계과	연 락 처	625-2630
	성 명	김 순 금 (서명 또는 날인)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급식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 비용 1억원 미만

- 결산검사위원 1인 수당 및 급식비 예상 비용: 418만원
- ※ 결산검사위원 수당 기준(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구 분	1인당 단가
수당	400만원(20만원*20일)
급식비	18만원(9천원*20일)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입법정책과 재정분석팀장 허지혜(032-625-8060)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요인 : 결산검사위원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예산은 연간 20,900천 원으로(2026년 예산안)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 회계과 박은주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감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 「부천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05>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개정 2013.08.0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검사위원은 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부천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08.05,2022.1.3.>

② 의회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3.08.05.,2022.07.05.>

1.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중전의 제2호를 제1호로 이동함 2024.2.19.]
2. 그 밖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전의 제3호를 제2호로 이동함 2024.2.19.]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8.05>
-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3.08.05>
- ⑤ 결산검사 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3.08.05>

제4조(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3.08.05>

② 제1항에 따른 위촉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사전에 위임을 받은 대표 검사위원이 의장에게 요청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더 늘릴 수 있다.<개정 2013.08.05>

제5조(선임의 금지 등) ① 시 소속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개정 2013.08.05>

② 시의 결산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자녀 및 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3.08.05>

제6조(대표 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 위원을 두되, 대표 위원은 의원인 검사위원이 된다.<개정 2013.08.05>

② 대표 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 위원에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검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08.05>

제6조의2(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2.1.3.>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그 밖의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3.08.05]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을 따른다.<개정 2013.08.05><전문개정 2018.5.21.>

② 삭제<2016.11.21>

제8조(검사 등에 대한 협조) ① 검사위원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5.2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과 시금고의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8.05., 2018.5.21.>

②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의회는 결산심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3.08.05><개정 2018.5.21.>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검사위원에게는 제4조의 위촉기간에 대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검사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8.05>

② 일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일비지급기간의 계산은 제4조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후라 하더라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게 되는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일비를 추가로 지급한다.<개정 2013.08.05>

② 제1항의 일비지급기간에는 위촉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공무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①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공무여행을 하였을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3.08.05>

②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2024.2.19.>

참고 3

타 시·군 비교표

연번	자치단체	2024년	2025년	결산검사 위원수	조례 규정
1	수원시 (37명)	박현수(국민의힘) 국미순(국민의힘)	사정희(더불어민주당) 이대선(더불어민주당)	7명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7명 으로 하며, 검사위원 중 수원시의회의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2	용인시 (32명)	장정순(더불어민주당) 이창식(국민의힘)	김영식(국민의힘) 이상욱(더불어민주당) 박병민(더불어민주당)	9명	용인시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5명 이상 10명 이내 로 한다. 이 경우 용인시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
3	고양시 (34명)	김미수(더불어민주당) 원종범(국민의힘)	이철조(국민의힘) 최성원(더불어민주당)	7명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7명 으로 하며, 위원 중 2명은 고양시의회의원으로 한다.
4	화성시 (25명)	장철규(더불어민주당) 김종복(국민의힘)	이용윤(더불어민주당) 송선영(국민의힘)	7명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7명 으로 한다.
5	성남시 (34명)	박종각(국민의힘) 김선임(더불어민주당)	김종환(국민의힘) 박경희(더불어민주당)	7명	결산 검사위원의 정수는 7명이 상 10명 이내 로 하며, 위원 중 성남시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6	남양주시 (21명)	정현미(더불어민주당) 원주영(국민의힘)	전혜연(국민의힘) 김상수(더불어민주당)	7명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 로 한다. 이 경우 남양주시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
7	평택시 (18명)	최선자(더불어민주당)	김순이(국민의힘)	6명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 로 한다. 이 경우 평택시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연번	자치단체	2024년	2025년	결산검사 위원수	조례 규정
8	안양시 (20명)	김정중(국민의힘) 곽동윤(더불어민주당)	강익수(국민의힘) 김도현(더불어민주당)	7명	위원의 정수는 7명 으로 하며, 위 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 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9	시흥시 (16명)	김찬심(국민의힘)	이상훈(더불어민주당)	7명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7명 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특정 성별 이 10분의 6 을 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10	파주시 (15명)	오창식(국민의힘) 박은주(더불어민주당)	최유각(더불어민주당) 윤희정(국민의힘)	7명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 상 10명 이내 로 한다. 이 경우 파주시의회의원은 위원수 의 3분 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11	김포시 (14명)	김계순(더불어민주당)	한종우(국민의힘)	10명	김포시 결산검사 위원 정수 는 3명 이상 10명 이하 로 한다. 다 만, 김포시의회 의원 은 위원 수 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 을 초과할 수 없다.
12	의정부시 (11명)	김태은(국민의힘) 정진호(더불어민주당) 김지호(더불어민주당)	김현주(국민의힘) 이계옥(더불어민주당) 강선영(더불어민주당)	10명	①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 로 하고,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 의 3분의 1 이 하로 하며, 3명 을 초과할 수 없 다.
13	광주시 (10명)	조예란(국민의힘)	왕정훈(더불어민주당)	5명	광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명 으로 한다. 이 경우 광주시의 회의원은 검사위원 수 의 3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14	하남시 (10명)	임희도(국민의힘) 오승철(더불어민주당)	최훈중(더불어민주당) 박선미(국민의힘)	7명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7명 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남시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 의 3분의 1 이하 로 하되, 3명 을 초과할 수 없다.

연번	자치단체	2024년	2025년	결산검사 위원수	조례 규정
15	양주시 (8명)	강혜숙(국민의힘)	한상민(더불어민주당)	5명	①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양주시의회 의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 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6	광명시 (11명)	김종오(국민의힘) 설진서(국민의힘) 김정미(더불어민주당)	안성환(더불어민주당) 이형덕(더불어민주당) 김정미(더불어민주당)	9명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7	군포시 (9명)	이우천(더불어민주당) 신경원(국민의힘)	이길호(더불어민주당) 이훈미(국민의힘)	6명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6명으로 하며, 군포시의회 의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18	오산시 (6명)	조미선(국민의힘)	전예슬(더불어민주당)	5명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19	안성시 (7명)	최호섭(국민의힘)	이관실(더불어민주당)	5명	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0	구리시 (8명)	김성태(더불어민주당) 이경희(국민의힘)	양경애(더불어민주당) 김용현(국민의힘)	6명	구리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6명으로 한다. 이 경우 구리시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1	의왕시 (7명)	박현호(개혁신당) 한채훈(무소속)	노선희(국민의힘) 서창수(더불어민주당)	6명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의왕시의회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2	포천시 (7명)	손세희(더불어민주당) 김현규(더불어민주당)	안애경(국민의힘) 서과석(국민의힘)	6명	포천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23	양평군 (6명)	오혜자(국민의힘) 최영보(더불어민주당)	송진욱(국민의힘) 지민희(국민의힘)	7명	양평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연번	자치단체	2024년	2025년	결산검사 위원수	조례 규정
24	여주시 (7명)	진선화(더불어민주당)	이상숙(국민의힘)	3명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여주시의회 의원은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5	동두천시 (7명)	황주룡(국민의힘) 임현숙(더불어민주당)	김재수(더불어민주당) 이은경(국민의힘)	7명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26	연천군 (7명)	박양희(더불어민주당)	박운서(국민의힘)	5명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9명이내로 한다.